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2. 제정이유
 ○ 음식판매자동차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먹거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 나. 음식판매자동차 및 휴게음식점영업 등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 다.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(안 제3조)
4. 참고사항
 가. 관련법령 :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
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 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[2017. 8. 17 ~ 9. 6]
 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
 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5. 검토의견
 ○ 본 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먹거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유원시설 등 8개 지역에 음식판매자동차(푸드트럭)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시설 또는 장소를 정하였으나, 그 밖의 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제정하는 것으로써
 ○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와 휴게음식점영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3조에서는 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 ○ 법리 검토결과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음식판매자동차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거리 제공 기회 확대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